

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65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9월 3일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 조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르고 있으므로 ‘이의신청’이 아닌 ‘이의제기’로 변경함.

2. 수정안의 주요 내용

- ‘부과·징수 및 이의신청’을 ‘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’로 수정함(안 제12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2조제2항 중 “부과·징수 및 이의신청”을 “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2조(과태료) ① (생략) ② 제 1항에 따른 과태료의 <u>부과징수</u>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의 규정을 적용한다. ③ (생략)	제12조(과태료 부과 징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 <u>부과·징수 및 이의신청</u>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	제12조(과태료 부과 징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 <u>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</u>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“부과징수”를 “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과태료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 1항에 따른 과태료의 <u>부과 징수</u>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2조(과태료 부과 징수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</u>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